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

2012년 10월 태국 방콕, 제 63회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
(건강과대안 번역)

서문

최근 몇년간 자신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만족도가 저하된 나라들에서 의사들의 집단적 행동이 점차 증가하여 혼란 일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직접적 및 간접적인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하여 항의 행동과 봉쇄(sanction)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사들은 단지 개별적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의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를 향상시켜 의료의 접근성과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만 한다.

의사들은 전문가적 의무를 저야하지만 종종 피고용자이기도 하다.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의사들의 의무와 피고용자로서 의사들의 권리는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파업이나 여타 형태의 집단행동은 종종 윤리적, 도덕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성명은 이런 의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권고

세계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국가의사협회들(NMAs)에 권고한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 대한 윤리적, 전문가적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 행동이 국가의사협회가 조직하거나 연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의사협회는 의사들 개인이 그/그녀의 윤리적 의무를 알고 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언제든 가능하다면, 의사들은 비폭력적 공공 집회, 로비와 홍보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 혹은 협상 혹은 중재를 통한 개혁을 위한 압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만약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국가의사협회들은 대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고, 파업기간 내내 필수적 및 응급 의료 서비스와 치료의 연속성이 제공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더해 국가의사협회들은 예외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들을 장려해야 한다. 만약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국가의사협회들은 환자들과 대중들에게, 그들의 갈등에서의 요구사항과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중들은 모든 파업 행동과 그들이 제한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어야 한다.